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조자 등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공제·환급받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상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인정 범위 확대(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

치, 종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취득한 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중과세 대상 주택의 예외 확대(안 제28조의2제8호다목 및 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 1)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 2) 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거주 의무자 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 의무자 등의 거주 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40조제2항제4호)

종전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로서 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 1)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 2)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마.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을 위한 담배의 폐기 절차 마련(안 제70조의2 제2항 신설 및 제3항)

-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고서에 폐기에 정일 등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서에 폐기장소 등을 기재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안 제79조제2항)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중 어린이집 경영자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사람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규정 삭제(안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4항,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절차, 특별징수분
납세지, 환급 방법 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위해 규정한 사항을 삭제
하도록 함.

아. 자동차세의 연납 공제율 변경(안 제125조제6항)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공제하
는 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2025년 이후 100분의 3의 율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5의 율로 하도록 함.

자. 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마
련(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2
신설)

2023년 3월 14일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 등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 등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
가액은 분양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이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
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6.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을 “유사부동산등”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유

사부동산등의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축하여”를 “신축하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한 주택을”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약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2제13호 본문 중 “미분양 주택”을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3의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2제15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거주 의무자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 의무자등의 거주 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라.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
제 적용주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매제한 위반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같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매입신청을 받거나 전매
제한 위반으로 취득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금지 의무를 위
반한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3제1항 중 “1세대란”을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후단 중 “분양계약일”을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
양권의 매매·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
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
득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본문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주
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의6제2항제2호 중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법 제15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같은 연도 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구(舊)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신(新) 소재지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각각”을 “신(新) 소재지에 법 제
2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
다.

제5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
부금액 및 납부일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정보”
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정보의 제공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와”를 “시장·군수(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사항”을 “사항(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제78조제1항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대기환경보

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방지시설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
시설용 건축물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7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
제85조의2제2항 중 “300만원”을 “360만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4항을 삭제
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8장제2절의2(제99
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5제3항 전
단 중 “법 제103조의13제5항”을 “법 제103조의13제3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7제4항을
삭제한다.
제1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의 율을 말한다.

별표 1 제2종 제177호, 제179호 및 제18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3종 제273호를 제275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273호 및 제27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3. 「수산업법」 제71조에 따른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274. 「약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별표 1 제4종 제105호를 삭제하고, 같은 종 제212호를 제213호로 하며, 같은 종에 제2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별표 1 제5종 제48호를 제49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의 신고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산 또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text{가액} = A \times [B - (C \times B / D)]$$

A: 해당 토지의 공급미터당 공시지가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② 이 영 시행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제1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text{가액} = A \times [B - (C \times B / D)] - E$$

A: 해당 토지의 공급미터당 공시지가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③ 이 영 시행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제1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재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환지계획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이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text{가액} = (A \times B) - C$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B: 해당 토지 면적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대통령령 제3435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8조의4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8조의4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부터 제4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3호 및 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28조의2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주택분양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세 연세액 공제 금액의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 ④ (생략)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⑤ ----- ----- ----- ----- ----- ----- 부동산등(이하 “ <u>유사부동산등</u> ”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이하 “ <u>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u> ”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 -----.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 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생략)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 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에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유사부동산등의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⑧ 유사부동산등-----

-----.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 과세의 예외) -----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
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
로 보지 않는다.

1. ~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illegible]

1. ~ 7. (현행과 같음)

[illegible]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
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신설>

9. ~ 12. (생략)

13.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
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

조제1호의3의 공공매입임
대주택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
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
한다)가 해당 공공매입임
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약정
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약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양
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
다.

9. ~ 12. (현행과 같음)

13. -----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
외한다.

<신 설>

<신 설>

14. (생 략)

15. 「주택법」 제2조제10호나

-----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
약을 체결한 주택. -----

-----.

13의2. 「법인세법」 제46조제2
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
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
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는 제외한다.

13의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
택

14. (현행과 같음)

15. -----

목의 사업주체가 취득하는 다 음 각 목의 주택 가.·나.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16. (생 략)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주택법」 제57조의2제3 항에 따른 거주 의무자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 의 무자등의 거주 의무 위반으 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라.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하 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 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매제한 위반으로 취득하 는 주택 및 같은 법 제78조 의2제3항에 따른 매입신청 을 받거나 전매제한 위반 으로 취득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 「주택법」 제65조제3항 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금 지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 16.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
---	---

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①

--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
분양권의 매매 · 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
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서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3.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

12월 31일-----

-----.

-----.

가.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 7. (생략)

8.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 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

-----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

3. ~ 7. (현행과 같음)

8. ----- 2027년 12월 31일-----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에 해당
하는 오피스텔

9.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에서 제외한다.

가. 나. (생략)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생략)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9. ----- 2027년
12월 31일-----

[illegible]

가. · 나.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제40조(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제1항제6호-----

<삭 제>

제40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생략)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5. · 6. (생략)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생략)

②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舊)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신(新) 소재지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각각 법 제3장 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등기로서 같은 사항을

1. ~ 3. (현행과 같음)

4.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5. · 6. (현행과 같음)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신(新)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

-----.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삭제>

본점과 지점 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서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한 건으로 본다.

⑤ (생 략)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①
(생 략)

<신 설>

<신 설>

제70조의2(세액의 공제·환급의
사후관리) ① (생 략)

<신 설>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
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의 납부처·납부금액 및 납부일
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라 한다)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
부정보의 제공은 정보통신망 또
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의2(세액의 공제·환급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조사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

②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u>시장·군수와</u>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u>사항</u> 2. (생략)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	<u>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u> ③ ----- ----- ----- ----- ----- <u>시장·군수(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와 ----- ----- -----. 1. ----- ----- <u>사항(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u> 2. (현행과 같음)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
--	---

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 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신 설>

-----.

1.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

<신 설>

<신 설>

2. (생 략)

② (생 략)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생 략)

②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

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시설용 건축물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 6. (생략)

<신설>

③ (생략)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87조(납세지 등) ① ~ ③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360만원-----.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87조(납세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를 말한다.

1. 법 제103조의13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의 인출
을 제한한 계좌(이하 이 조에
서 “인출제한계좌”라 한다)가
1개인 경우: 해당 인출제한계
좌

2. 인출제한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날을 기준으
로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가
장 큰 인출제한계좌. 다만, 특
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같은 경
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설한
인출제한계좌로 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99조의2(예정신고 및 산출세액
의 계산) ① 법 제102조의6제1

<삭 제>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삭 제>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삭 제>

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
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2조의6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
출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
라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text{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times C$$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

B: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
액(같은 영 제20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
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로 한정한다)

C: 법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
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2
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과 합
산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
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려

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times D] - E$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

B: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C: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같은 영 제20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D: 법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99조의3(예정신고에 따른 세액
납부) 법 제102조의6제2항에 따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
방소득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
서로 납부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삭 제>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99조의4(확정신고·납부) ①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라 금융
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려
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② 법 제102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
로 납부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세율) ① 삭 제

② ~ ⑧ (생략)

⑨ ~ ⑪ 삭제

<신설>

⑬ ~ ⑯ (생략)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삭제>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세율)

② ~ ⑧ (현행과 같음)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과
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
분의 10으로 한다.

⑬ ~ ⑯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3에 따른 초과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① ~ ⑤ (생략)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신 설>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의 율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2(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text{가액} = A \times [B - (C \times B / D)]$$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② 이 영 시행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제1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text{가액} = A \times [B - (C \times B / D)] - E$$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③ 이 영 시행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제1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재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경

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환지계획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이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
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
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같
은 조 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
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
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text{가액} = (A \times B) - C$$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B: 해당 토지 면적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대통령령 제34353호 지방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4353호 지방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부터 제9
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
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8조의4제2
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6
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에 한정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u>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u>② 제28조의4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43